목차

# 4. 세부유형별과실비율적용기준

- 가. 교차로(+자로, T자로 등) 사고
- (1) 양쪽 신호등 있는 교차로

## **1)**직진대(對) 직진사고 - 상대차량이측면에서진입[차 1]



### 사고상황

 ● 신호기에의해교통정리가이루어지고있는교차로에서서로다른도로를이용하여녹색 신호에교차로에진입하여직진중인A차량과 적색신호에교차로에진입하여직진중인 B차량이충돌한사고이다. 또한 다른 말로는 신호등이 있고 내가 초록불에 직진을 했고 상대방이 빨간불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 해당 관련 과실 비율은 기본적은 초록불에 들어간 내가 0이고 상대방이 100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내가 현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0, 중대한 과실은 +20으로 상황에 따라 10에서 20의 과실비율이 증가 할 수있고 그에 따라 10:90 또는 20:80으로 나올 수 있다. 참고 판례는 아래 2쪽 페이지를 참고한다.

목차

## 기본과실비율해

실 신호기가있는교차로에서신호는양 차량운전자가신뢰하는것으로, ★차량은 B차량이 적색신호를 위반하여직진할것을예상하고 주의해야할 이유가없으므로★차량의 일방과실비율로정한다.

## 참고판

#### 데 대법원1999.8.24.선고99다30428 판결

신호등에의하여교통정리가행하여지는교차로를진행신호에따라진행하는차량의운전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다른차량들도교통법규를준수하고충돌을피하기위하여적절한조치를취할것으로믿고운전하면되고,다른차량이신호를위반하고자신의진로를가로질러진행하여올경우까지예상하여그에따른사고발생을미리방지할특별한조치까지강구할주의의무는없으며,이른아침시간대의통행량이많지않은교차로라고하여달리볼것도아니다.

#### ⊙대법원2001.9.7.선고2001다40732판결

다만신호를준수하여진행하는차량의운전자라고하더라도》이미 교차로에진입하고있는다른차량이있다거나<br/>
때다른 차량이그 진행방향의신호가진행신호에서정지신호로바뀐 직후에교차로를진입하여계속진행하고있는것을발견하였다거나<br/>
때또는 그밖에신호를위반하여교차로를진입할것이예상되는특별한경우라면그러한차량의동태를두루살피면서서행하는등으로사고를방지할태세를갖추고운전하여야할주의의무는있다할것이지만,그와같은주의의무는어디까지나신호가바뀌기전이나그직후에교차로에진입하여진행하고있는차량에대한관계에서인정되는것이고,신호가바뀐후다른차량이신호를위반하여교차로에새로진입하여진행하여올경우까지를예상하여그에따른사고발생을방지하기위한조치까지강구할주의의무는없는것이다.

○대법원1994.9.9. 선고94다18003판결 신호에따라운행한운전자가제한속도를초 괴하여운전한경우라도과속한사정만으로그에게 과실이있다고할수없고,그와같이과속을 하지아니하였더라면상대방자동차의신호위반을 발견하는즉시정차또는감속을하여충돌을피할수있는사정이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 과속운행을과실로볼수있다.



#### 사고상황

● 신호기에의해교통정리가이루어지고있는교차로에서서로다른방향을이용하여녹색 또는황색신호에교차로에진입한후 신호가바뀔 때까지아직 교차로를벗어나지못한 A차량과녹색신호에교차로에진입하여직진중인B차량이충돌한사고이다. 다른 말로는 내가 녹색에 직진을 하고 교차로에 진입을 한 상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교차로를 못 빠져나간 상태였고 상대방 차량은 적색 신호에서 녹색 신호로 바뀌면서 직진을 했고 교차로에 못 빠져나간 내 차량을 박아서 일어난 사고이다. 해당 같은 경우는 내가 녹색에 직진을 하고 정체로 인해 못 나간 상태이니 내가 30 상대방이 70으로 과실 비율이 인정된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교차로가 이미 정체 중에 내가 진입을 했다면 여기서 과실 비율 +10, 내가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 내가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20이다.상황에맞게4060,5050,7030으로과실비율이결정날수있다. 여기서 내가 황색(주황불)신호에 들어왔다면 과실비율은 내가 80 상대방이 20으로 잡혀진다.해당기본과실비율을토대로과실비율이조정된다.해당사고참고 판례는 6페이지를참고한다.

#### 기본과실비율해설

A차용이녹색신호에정상적으로선진입하였고, 신호변경시까지교차로를미처벗어 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치로에 후진입하는라다랑은 이러한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는점을감안하여양차량의기본과실비율을3070으로 정한다.

A차량이황색신호에진입하여신호위반을하였다는점에서괴실이 바꾸중하다고할 것이지만, 교차로에후진입하는차량 역시전방좌우에서이미교차로에진입하여진행 중인차량이있는지여부를살펴보고그러한차량이있는경우그동태를 살피면서서행하는

등 사고를방지할태세를갖추고운전해야할 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러한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위반하였다는점에서과실이 인정되므로양 차량의 기본과실비율을80:20으로 정한다.

# 참고판례

### ○대법원1995, 10, 13, 선고95다29369 판결

교차로의신호가진행신호에서정지신호로또는정지신호에서진행신호로바뀌는즈음에는 신호를위반하여교차로를통괴하는차량이종종있으므로신호가정지신호에서진행신호로 막바뀐즈음에진행신호를따라교차로를통과하려는자동차운전자는비록자신은교통신호 <del>를준수하면서운행하고있다고하더라도좌우에서이미교차로를진입하고있는차량이있</del> 는지여부를살펴보고또한그러한차량이있는경우그동태를두루살피면서서행하는등으 로사고를방지할태세를갖추고운전하여야할주의의무가있다.

## ⊙대법원1994. 6. 14.선고93다57520 판결

과 교차로에진입하기직전에진행방향신호가직진신호로바뀌어감속하지아니한채시속 약60km로 교차로를진입하면서,그진입전에이미위교차로의오른쪽에서정지신호로바뀐 뒤에도계속하여시속40°50km로 교차로를진입하여들어오는A 승용차를발견하고도A가 정자할 것으로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취하지 아니한채 그대로 통과하려다사고가 발생한 경우A의과실70%,B의과실30%

목차

차1-3	황색직진대적색직진					
	(A) 황색직진 (B) 적색직진					
	<b>8</b> <sup>4</sup> <b>○</b>	기본과실비율			A30	<b>B</b> 70
		과 실 비	1	A 적신호직전진입	+10	
적색 🖁				A 현저한과실	+10	
<b>2</b>		<sup>-</sup> 율 조정예시		A중대한과실	+20	
				B현저한과실		+10
				B중대한과실		+20

#### 사고상황

● 신호기에의해교통정리가이루어지고있는교차로에서서로다른방향을이용하여황색 신호에교차로에진입하여직진중인A차량과 적색신호에교차로에진입하여직진중인 B차량이충돌한사고이다. 또한 다른 말로는 내가 황색(주황불)에 직진을 하였고 상대방은 적색 신호에 직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다. 이런 경우 내가 30 상대방이 70으로 과실 비율이 잡히다. 하지만 여기서 또한 내가 적신호직전에 진입하면 +10,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10,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20이다. 나와 상대방의 총 과실비율은 100으로 생각하고 해당 조건에 맞춰서 기본과실 비율에 더하면 된다.

#### 기본과실비율해설

○양차량모두신호위반에해당하지만,적색신호에진입한화차량의과실이더중하므로양 차량의기본과실비율을30:70으로 정한다.